

의안번호	2216018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 계 번호	26D0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인구(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 5천명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1,900만원, 2030년 6억 8,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5억 7,600만원(연평균 5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구 2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증원 (안 제23조제2항)	419	480	491	503	683	2,576	515

주: 1. 인구 2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증원(안 제23조제2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4명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 3명, 비례대표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보전액, 기탁금 국고귀속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제2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함. 이 경우 인구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제2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4명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구 3명, 비례대표 1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동법 [별표 3]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도록 하여 총 정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의 규정대로 인구 25만명 이상(선거권이 있는 등록외국인 포함)인 경우에는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정수를 최소 1명 증원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치구·시·군별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외국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규정대로 의원정수를 추정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 3명, 비례대표 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두고 단수는 1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1명의 증가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의정활동¹⁾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을 포함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 자치구·시·군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이 있어 재정소요의 변화 발생
 - (지출) 의정활동 관련 비용, 정책지원관 인건비,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
 - (수입)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자치구·시·군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본 추계에서는 2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7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부문은 자치구·시·군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지방선거 시 선거비용보전액이고, 수입이 증가하는 부문은 지방선거 시 기탁금 수입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 및 수입항목별 인원, 1인당 지급액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의 변화를 산출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2.0%	2.0%

- **(의정활동)** 개정안에 따라 4명의 자치구·시·군의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원)**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자치구·시·군의원은 지역구 3명, 비례대표 1명
 - **(1인당 지급액)** 자치구·시·군의원 1인당 지급액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기준 전년대비 상승률 2.3%에 따라 증가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32.7%³⁾을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효율⁴⁾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2] 1인당 지급액 추정(각 항목별 연간지급액):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	1,800	1,800	1,800	1,800	1,800
월정수당	2,916	2,992	3,069	3,149	3,231
기관부담금	416	437	460	484	510
기본경비	1,990	2,022	2,055	2,088	2,123
소계	7,122	7,251	7,384	7,522	7,664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자치구·시·군의원 2명 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2명의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 7급으로 채용하며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4)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기관부담금 효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29%, 2028년 9.444%, 2029년 0.785%, 2030년 10.129%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⁵⁾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 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에게 지급),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3]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7급)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7급)	60,326	1,680	4,080	66,086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기준 보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3.0%에 따라 상승
-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요율⁶⁾, 기본경비는 보수에 20.5%⁷⁾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4] 정책지원관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6,609	6,807	7,011	7,222	7,438
기관부담금(b=a×기관부담금요율)	864	894	925	959	995
기본경비(c=a×기본경비 비율)	1,770	1,811	1,853	1,896	1,941
1인당 비용(=a+b+c)	9,243	9,512	9,789	10,078	10,375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 6)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의 기관부담금요율은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
- 7)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 인력운영비(39조 6,999억원) 대비 기본경비등(8조 1,50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후보자 수는 7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지역구 1.71배, 비례대표 1.76배)을 활용하여 추정하면 7명
-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중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수의 비율은 지역구 15.7%, 비례대표 20.4%이고 국고에 귀속되는 1인당 기탁금은 지역구 268만원, 비례대표 183만원⁸⁾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 2,346만원, 비례대표 1,267만원⁹⁾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5]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지역구	2,597	-	-	-	2,810
	비례대표	1,403	-	-	-	1,518
1인당 기탁금 귀속액	지역구	268	-	-	-	268
	비례대표	183	-	-	-	1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구 후보자 698명의 총 귀속액은 18억 6,830만원으로 1인당 약 268만원, 동일한 경우로 비례대표 후보자 139명의 총 귀속액은 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약 183만원

9)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1,042억 8,945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4,445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346만원으로 추정되고 비례대표의 경우 총 86억 1,759만원에 후보자 수는 680명으로 1인당 약 1,267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인구(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 5천명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1,900만원, 2030년 6억 8,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5억 7,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 활동	인원(a, 명)		4	4	4	4	4	—
	1인당 지급액(b, 만원)		3,561	7,251	7,384	7,522	7,664	—
	연간 지급액(c=a×b, 백만원)		142	290	295	301	307	—
	자산취득비(d=a명×498만원, 백만원)		20	—	—	—	—	—
	소계(e=c+d, 백만원)		162	290	295	301	307	1,355
정 책 지원관	인원(f, 명)		2	2	2	2	2	—
	1인당 지급액(g, 만원)		4,621	9,512	9,789	10,078	10,375	—
	연간 지급액(h=f×g, 백만원)		92	190	196	202	208	—
	자산취득비(i=f×498만원, 백만원)		10	—	—	—	—	—
	소계(j=h+i, 백만원)		102	190	196	202	208	898
선 거	후보자 수(k, 명)	지역구	5	—	—	—	5	—
		비례대표	2	—	—	—	2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l, 만원)	지역구	2,597	—	—	—	2,810	—
		비례대표	1,403	—	—	—	1,518	—
	보전액(m=k×l, 백만원)		158	—	—	—	171	62
	1인당 기탁금 귀속액 (n, 만원)	지역구	268	—	—	—	268	—
		비례대표	183	—	—	—	183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3	—	—	—	3	6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419	480	491	503	683	2,576

주: 2026년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항목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하였고, 선거항목의 기탁금 수입은 후보자 수에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비율(지역구 15.7%, 비례대표 20.4%),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을 곱하여 산출함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